#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공고일 : 2025. 03. 28. ]

2019. 9. 27.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3.28.(급)**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5.03.28.)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5.03.28.) 현재 군포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mark>종전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선정된</mark>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회공고 영구임대주택 예비자로 선정되면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자 지위 삭제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LH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1. 건설위치

| 단지명            | 주 소                                   | 건설호수       |
|----------------|---------------------------------------|------------|
| 군포당동1<br>(A-1) |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79 (당동, 삼성마을 1단지)         | 90(영구임대)   |
| 군포송정3<br>(A-1)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 (도마교동, LH군포송정3단지) | 120 (영구임대) |

<sup>※</sup> 군포당동1은 국민임대(414호), 영구임대(90호), 군포송정3은 국민임대(120호) 행복주택(480호) 영구임대(120호) 호)로 구성된 혼합단지임.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                |     |          | 세대당 계약면적(m²)   |          |           |         |           |          | 금회        | 구조            |
|----------------|-----|----------|----------------|----------|-----------|---------|-----------|----------|-----------|---------------|
| 단지             | 주택형 | 건설<br>호수 | 주거             | 주거       |           | 그 밖의 공용 |           | 대기<br>중인 | 모집<br>예비자 | 구조<br>및<br>난방 |
|                |     | 오구       | 주거 주거<br>전용 공용 | 기타<br>공용 | 지하<br>주차장 | 합계      | 영원<br>예비자 | (45)     | 난방        |               |
| 군포당동1<br>(A-1) | 21A | 28       | 21.63          | 11.51    | 1.76      | 10.80   | 45.71     | 4        | 10        | 철근            |
|                | 26  | 44       | 26.66          | 14.19    | 2.18      | 13.32   | 56.35     | 1        | 15        | 콘크리트<br>(벽식)/ |
| 군포송정3<br>(A-1) | 24A | 96       | 24.65          | 15.30    | 2.25      | 8.60    | 50.81     | 5        | 20        | 지역난방          |

<sup>※</sup>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임대조건(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 적용)

| 다지            | 단지 주택형           |                      | 기본임대조건(원)  |                   | 전환가능<br>보증금   |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
| LA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포증임<br>한도액(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 「가」군                 | 2 041 000  | 44 000 40 720     |               | 1,000,000  | 3,041,000     | 34,880  |
|               | 21A              | . 10 도               | 2,041,000  | 40,720            | (-)           | 1,000,000  | 1,041,000     | 43,630  |
| ¬ <del></del> |                  | 「나」군                 | 15,457,000 | 111,700           | (+)           | 11,000,000 | 26,457,000    | 47,250  |
| 군포<br>당동1     |                  | 니그                   | 13,437,000 | 111,700           | (-)           | 11,000,000 | 4,457,000     | 143,780 |
| (A-1)         |                  | 「가」군                 | 2,513,000  | 50,280<br>137,450 | (+)           | 3,000,000  | 5,513,000     | 32,780  |
| (,, ,,        | 26               | <b>7</b> 1.1 ∟       |            |                   | (-)           | 1,000,000  | 1,513,000     | 53,190  |
|               | 20               | 「나」군                 |            |                   | (+)           | 14,000,000 | 33,035,000    | 55,780  |
|               |                  | -1] &                | 19,033,000 | 157,450           | (-)           | 14,000,000 | 5,035,000     | 178,280 |
| 7             |                  | 「가」군                 | 2.425.000  | 48,300            | (+)           | 3,000,000  | 5,425,000     | 30,800  |
| 군포<br>송정3     | 24A              | <b>/</b>  ] <u>L</u> | 2,425,000  | 40,300            | (-)           | 1,000,000  | 1,425,000     | 51,210  |
| (A-1)         | 2 <del>4/1</del> | 「나」군                 | 15,354,000 | 111,260           | (+)           | 11,000,000 | 26,354,000    | 47,090  |
| (A-1)         |                  | -1] &                | 13,334,000 | 111,200           | (-)           | 11,000,000 | 4,354,000     | 143,340 |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 계약금(기본보증금 5%)은 계약 시, 잔금(기본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 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 합니다.
-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3.28.)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I   |   |  |   |  |  |  |  |  |
|-------|---|---|--|---|--|--|--|--|--|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   |  |  |  |  |  |
|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  |   |  |  |  |  |  |
|       | 세대구성  | 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  |  |  |
|       | • 신청자   |   |  |   |  |  |  |  |  |
|       | • 신청자의 년  |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br>'분리배우자') 포함   | 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  |  |  |  |  |
|       | • 신청자의 경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br>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  |  |  |
|       | • 신청자의  | 배우자의 직계비속<br>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br>한함   |  |  |  |  |  |
|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   |  |   |  |  |  |  |  |
| 세대구성원 | 외국인<br>배우자  | 거소신고)을 한 사람   | 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br>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  |  |  |  |  |
|       | 외국인<br>직계 <del>존</del> 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지<br>내거소신고)을 한 사람.<br>신청자 또는 분리배의<br>등본에 기재되어 있거<br>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 | H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br>으로서,<br>P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br>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br>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br>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br>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  |  |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니   | 사격검증 예외  |   |  |  |  |  |  |
|       | ■ 예비신혼부<br>예비배우자<br>■ 예비신혼부   |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성   | 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br>등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 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br>내원을 포함<br>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  |  |  |  |  |  |

# ※ <u>단</u>,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 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    |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 소득 |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    |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br>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br>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    | 2. <b>총자산 기준</b><br>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b>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b> )<br>가액 합산 기준 ( <b>23,700</b> )만원 이하  |
| 자산 | 3. 자동차 기준<br>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br>*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 입주자격 구분      |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            |  |  |
|--------------|--------------|--------|-----------------|-------------|------------|--|--|
| (4. 입주자 선정방법 | 기기이스         | 출생자녀수  | 적용              | 적용 자산기준금액   |            |  |  |
| 참조)          | 가구원수         | (태아포함) | 소득기준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              | 1인           | 0인     | 70%             | 237,000,000 | 38,030,000 |  |  |
|              | 2인           | 0인     | 60%             | 237,000,000 | 38,030,000 |  |  |
| 차. 일반입주자     | 2 L'         | 1인     | 70%             | 261,000,000 | 41,830,000 |  |  |
| N. 20 0 TN   |              | 0인     | 50%             | 237,000,000 | 38,030,000 |  |  |
|              | 3인 이상        | 1인     | 60%             | 261,000,000 | 41,830,000 |  |  |
|              |              | 2인 이상  | 70%             | 285,000,000 | 45,630,000 |  |  |
|              | 1인           | 0인     | 90%             | 237,000,000 | 38,030,000 |  |  |
| 나. 국가유공자 등   | 2인           | 0인     | 80%             | 237,000,000 | 38,030,000 |  |  |
| 마. 북한이탈주민    |              | 1인     | 90%             | 261,000,000 | 41,830,000 |  |  |
| 바. 장애인(1순위)  |              | 0인     | 70%             | 237,000,000 | 38,030,000 |  |  |
|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3인 이상        | 1인     | 80%             | 261,000,000 | 41,830,000 |  |  |
|              |              | 2인 이상  | 90%             | 285,000,000 | 45,630,000 |  |  |
|              | 1인           | 0인     | 120%            | 237,000,000 | 38,030,000 |  |  |
|              | 2인           | 0인     | 110%            | 237,000,000 | 38,030,000 |  |  |
| 타. 장애인(2순위)  | ۷ <u>۲</u> ۲ | 1인     | 120%            | 261,000,000 | 41,830,000 |  |  |
| 니, 경에진(4판귀)  |              | 0인     | 100%            | 237,000,000 | 38,030,000 |  |  |
|              | 3인 이상        | 1인     | 110%            | 261,000,000 | 41,830,000 |  |  |
|              |              | 2인 이상  | 120%            | 285,000,000 | 45,630,000 |  |  |

### ■ 소득기준별 금액

| 가구 |           | 20        | 24년도 도시급  | 근로자 가구원   | 수별 가구당     |            |            |            |
|----|-----------|-----------|-----------|-----------|------------|------------|------------|------------|
| 원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1인 | 1,799,082 | 2,158,898 | 2,518,715 | 2,878,531 | 3,238,348  | 3,598,164  | 3,957,980  | 4,317,797  |
| 2인 | 2,738,502 | 3,286,202 | 3,833,902 | 4,381,602 | 4,929,303  | 5,477,003  | 6,024,703  | 6,572,404  |
| 3인 | 3,813,487 | 4,576,184 | 5,338,881 | 6,101,578 | 6,864,276  | 7,626,973  | 8,389,670  | 9,152,368  |
| 4인 | 4,289,044 | 5,146,853 | 6,004,662 | 6,862,470 | 7,720,279  | 8,578,088  | 9,435,897  | 10,293,706 |
| 5인 | 4,515,524 | 5,418,629 | 6,321,734 | 7,224,838 | 8,127,943  | 9,031,048  | 9,934,153  | 10,837,258 |
| 6인 | 4,866,543 | 5,839,852 | 6,813,160 | 7,786,469 | 8,759,777  | 9,733,086  | 10,706,395 | 11,679,703 |
| 7인 | 5,217,562 | 6,261,074 | 7,304,587 | 8,348,099 | 9,391,612  | 10,435,124 | 11,478,636 | 12,522,149 |
| 8인 | 5,568,581 | 6,682,297 | 7,796,013 | 8,909,730 | 10,023,446 | 11,137,162 | 12,250,878 | 13,364,594 |

<sup>\*</su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sup>※</sup>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576,184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1,000,000원, 자동차가액 41,830,000원을 적용함

###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구   | 분        | 산정방법   |
|-----|----------|--|
| 소   | 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br>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br>•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br>•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br>•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br>•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li> <li>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li> <li>「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
|     | 자동차      |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     | 금융<br>자산 | <ul>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ul>   |

|     |          | • 예수금: 잔액   |
|-----|----------|---|
|     |          | │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     |          |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          |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 기타<br>자산 | <ul> <li>「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4.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 일반공급 순위

| 구분  | 순위  |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해당자)  |
|-----|-----|--|
| 일 고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안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한 사람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등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 구분                                  | 배점<br>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  |  |
|------------------|-------------------------------------|---|--|--|--|--|--|
|                  | 1년 미만                               | 22  |  |  |  |  |  |
| 1. 군포시           | 1~5년 미만                             | 24  | ▶ 모집공고일(2025.03.28.) 현재까지 연속하여 군포시 거주한 기간<br>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군포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  |  |  |  |
| 거주기간             | 5~10년 미만                            | 26  |  |  |  |  |  |
| (30점)            | 10~15년 미만                           | 28  | <b>산정</b>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br>※ 1989년 1월 1일 군포시로 승격 되기 전 기간은 불산입.  |  |  |  |  |
|                  | 15년 이상                              | 30  |  |  |  |  |  |
|                  | 만40세 미만                             | 19  |  |  |  |  |  |
| 2. <b>신청자</b>    | 만40~만50세 미만                         | 21  | ▶ 모집공고일(2025.03.28.)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  |  |  |  |  |
| 연령<br>(25점)      | 만50~만60세 미만                         | 23  | 월일을 기준으로 함   |  |  |  |  |
| (23 🗆)           | 만60세 이상                             | 25  |  |  |  |  |  |
|                  | 1인                                  | 22  |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  |  |  |
|                  | 2인                                  | 24  |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br>-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  |  |
| 3. <b>세대구성원수</b> | 3인                                  | 26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br>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30점)            | 4인                                  | 28  |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
|                  | 5인 이상                               | 30  | <ul><li>※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li><li>※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li></ul>  |  |  |  |  |
|                  |                                     | 15<br>(유형 3가지<br>해당시)<br>13<br>(유형 2가지<br>해당시)<br>11<br>(유형 1가지<br>해당시) | <ul> <li>▶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ul> <li>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의 "나목"),</li> <li>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li> <li>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li> <li>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li> <li>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li> <li>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li> <li>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li> <li>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li> <li>귀환국군포로</li> </ul> </li> </ul> |  |  |  |  |
| ※ 신청자를           | 점(7~15점)<br>를 기준으로 하되,<br>경우 세대원 포함 | <b>7</b><br>(유형 1가지)<br>※중복 가점 없음                                       |  |  |  |  |  |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                  |               |                  |  |    |
|--------------------------|---------------|------------------------|--|------------------|---------------|------------------|--|----|
| 배점 합산<br>( 배점<br>기준표 참조) | $\rightarrow$ | 군포시<br>전입일자가<br>오래된 사람 |  | 세대구성원수가<br>많은 사람 | $\rightarrow$ | 신청자 연령이<br>높은 사람 |  | 추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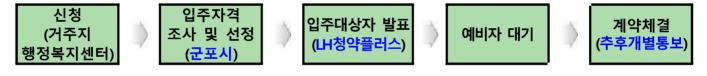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예비자 계약안내 |
|--------------------------------------|----------------------|------------------------------------|----------|
|                                      |                      | 2025.08.01(금) 17:00이후              |          |
| '25.04.14(월)~04.16(수)<br>10:00~17:00 | <b>군포시</b> 관내<br>거주지 | <u>http://apply.lh.or.kr</u><br>또는 | 개별안내     |
|                                      | 행정복지센터               | LH청약플러스: <u>www.lh.or.kr</u>       |          |
|                                      |                      | (임대주택→임대정보→공지사항)                   |          |

-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 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u>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 분 안 내 사 항  |           | 안 내 사 항                                 |
|--|-----------|---|
| <b>동의서 수집 사유</b>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 |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                                  |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sup>\*</sup>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이 통보 생략되므로 해당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5.03.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 기본서류

| 구비서류  |   | 비고   | 부수 |
|---|---|--|----|
|   | 영구임대주택<br>공급신청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br>(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br>제3자 제공 동의서   |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br>(일반공급 신청자 중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선택한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각  |
|   | 금융정보 등<br>( <del>금융</del> 신용보험정보)<br>제공 동의서 |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br>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 공 통   | 자산 보유<br>사실확인서                              |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br>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br>*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br>*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br>있는 자료<br>*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br>*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br>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1통 추가 제출 (일반공급 신청자 중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선택한 경우 예비배우자의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 |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br>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r>※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br>1통 추가 제출<br>(일반공급 신청자 중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선택한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1통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일반공급 신청자 중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선택한 경우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부표기)  | <ul>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군포시에서의 거주기 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li> <li>•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li> </ul>  |         |
| 대 상 자 | 혼인 관련 서류<br>(신혼부부·<br>예비신혼부부<br>배점 선택 시)                 | <ul> <li>신혼부부 &gt; <ul> <li>혼인관계증명서(상세)</li> </ul> </li> <li>예비신혼부부 &gt; <ul> <li>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 양식)</li> <li>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 양식)</li> <li>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li> <li>(입주 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li> </ul> </li> <li><ul> <li>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gt;</li> <li>(해당자에 한함)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li> </ul> </li> </ul>  | 각<br>1통 |
|       | 외국인등 <del>록</del> 사실증명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 임신진단서  | <ul> <li>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태아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li> <li>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ul>   |         |
|       | 출생증명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 |  |         |
|       | 입양관계증명서  | <ul><li>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양자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li>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li></ul>   |         |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신청자격 증명서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br>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서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br>는 그 유족                            | ·'12.7.1이전 등록자 :<br>지원대상자 확인원<br>·'12.7.1이후 등록자 :<br>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br>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보훈(지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br>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확인서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br>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br>(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경 등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사본   | 여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br>소득인정액 산정 내역<br>(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br>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 행정복지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추천서<br>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br>차상위계층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br>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br>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br>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기관   |  |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5.08.01(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1661-7700) → ③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의 입주</u> <u>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u>.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 및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③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신청 시 등록하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 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변경 하여야 합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 정보변경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
| 임대대상<br>및<br>조건 | <ul>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하셔야 합니다.</li> <li>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li> <li>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ul> |
| 신청자격            | <ul> <li>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li>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53조에 따릅니다.</li> </ul>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br>할 수 없습니다.  |
|                 | <ul> <li>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li> </ul>   |

| 구분                    | 유의사항   |  |
|-----------------------|--|--|
|                       | <ul>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ul>  |  |
| 입주대상자<br>결정 및<br>계약안내 | <ul> <li>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비랍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ul>   |  |
| 자동차<br>등록 관련          |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br>포함)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br>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을<br>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80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br>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  |
| 기타사항                  | <ul> <li>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i> <li>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옥상층에 설치함</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약 2.1m입니다.(2.0m ~ 2.2m)</li> <li>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 · 약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 등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비랍니다.</li> </ul> |  |

#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구분          | 설치항목                |  | 제공대상                     |
|-------------|---------------------|--|--------------------------|
| <br>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
|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             | 출입문 규격확대 및<br>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cm이상<br>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 욕실<br>(1개소에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br>(L자형 1개, —자형 1개) |                          |
| 한함)         | 좌변기<br>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장애의 정도가 심한<br>지체.뇌병변장애인, |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 ᄌᄞ          | 좌식 싱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 주방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
| 거실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sup>\*</sup>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u>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u>를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10.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 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 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 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1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삭제 <2022. 9. 6.>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삭제 <2022. 9. 6.>
-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 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 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년  | <u> </u>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
|     |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                                       |             |      |  |                  |
|     | 근로<br>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br>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br>-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br>이상 고용된 자 제외)<br>-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br>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br>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br>명세서<br>-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             |      |  |                  |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br>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br>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l l  |                        |                                       |             |      |  |                  |
|     |          | 공공일자리<br>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br>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br>근로내역  |                        |                                       |             |      |  |                  |
| 소득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br>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br>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br>*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br>-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b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  |                  |
|     |          | 1                     | I  | 1  | 1                      | 1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br>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br>-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      |  |                  |
|     | 재산<br>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br>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      |  |                  |
|     |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br>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 기타<br>소득 | 공적이전<br>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br>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br>산정)   | '  |                        |                                       |             |      |  |                  |
| 총자산 | 일반<br>자산 | 토지,<br>건축물<br>및<br>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br>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br>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br>-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br>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br>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 - 지방세정 자료  |                        |                                       |             |      |  |                  |

|     |                                    |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제외) |  |
|-----|------------------------------------|--|--|
|     | 자동차                                | 시방제법에 의안 사용사(제124소)도 등용사용사, 등업<br> 자도차 하무자도차 트스자도차 이르자도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br>- 지방세정 시가표준액<br>- 국토부 차적정보 |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br>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br>(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br>- 직권조사 등록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br>배를 의미<br>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br>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br>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기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자신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br>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br>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br>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br>: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br>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br>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부채<br>총자산 산정 시<br>자산금액<br>합계에서 차감)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br>임대보증금<br>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br>공사가 증명한 부채<br>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br>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br>수요자도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br>- 지방세정 시가표준액<br>- 국토부 차적정보 |

# 13. 주택단지 안내



전용 21.63m 평면도



| 면적내역(m²)> |       |  |
|-----------|-------|--|
| ① 거실/침실   | 10.64 |  |
| ② 주방/식당   | 6.65  |  |
| ③ 욕실      | 2.99  |  |
| ④ 현관      | 1.35  |  |

전용 26.66m' 평면도



| 면적내역(m²)> |       |  |
|-----------|-------|--|
| ① 거실/침실   | 10.53 |  |
| ② 주방/식당   | 11.67 |  |
| ③ 욕실      | 3.02  |  |
| ④ 현관      | 1.44  |  |

# 군포송정3 단지위치도



# 전용 24.65m A 평면도



| 면적내     | 역(m²)> |
|---------|--------|
| ① 거실/침실 | 14.07  |
| ② 주방/식당 | 5.98   |
| ③ 욕실    | 2.98   |
| ④ 현관    | 1.62   |

### 14.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에 대한 사항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8조 등에 의거, 금회 공고단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5. 문의처

| 문의처    | ・군포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br>・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 공고문 확인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임대정보<br>•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임대주택 → 임대정보 |
| 접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 당첨자 발표 | 2025. 08.01 (금) 17:00 이후<br>LH청약플러스( <u>https://apply.lh.or.kr</u> ) → 분양・임대정보 → 공지사항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8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